



새정부

공공기관 혁신기획관



기획재정부

기능조정

민간경합·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

핵심기능 중심 개편



1 민간부문의 성장으로

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

ex) 숙박시설 운영 등



2

지자체수행이
바람직한 기능 축소

- 업무 단순 위탁 및
지역별 특성을
고려해야 하는 경우



ex)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 등

3

직접 수행이
불필요한 비핵심 기능
폐지 또는 축소

ex) 골프장 관리 및 운영,
고유사업 외해외사업 등



4

디지털 전환 등
정책환경 변화에 따른
수요감소 기능 축소

ex) 특허문서전자화 업무 등



5

기관간 유사·중복 기능 통폐합 또는 조정



조직·인력

비대한 조직 인력 숨김화 및 '23년도 정원 감축



일정기간 정·현원차지속시
초과정원 감축 등 정·현원차 최소화



상위직 축소, 대부서화 등 조직 효율화

-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
- 구성원 적은 단위 조직 대부서화
- 지방·해외 조직 효율화
- 지원(기획, 인사, 경영평가)·파견 인력 조정 등



'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



인건비·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·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



경상경비, 업무추진비
금년 하반기 10% 이상 각각 절감,
내년 금년대비 3%, 10% 이상 각각 삭감



임·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*하고,
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,
수당 통·폐합 등으로 효율화

*(임원) 경제상황, 기관 재무 실적, 보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·조정(10월)
(직원) 기관별 임금 수준,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조정(12월)



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
보수 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,
직무·성과 중심으로 개편

자산

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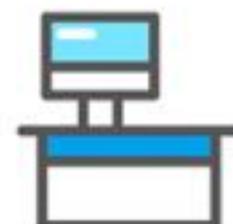
ex) 콘도 회원권, 골프 회원권 등
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,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,
유 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



고유·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
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, 출자회사 지분 정비

※ 정비 대상 제외 회사: ①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

② 자회사(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)



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

-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 시 초과면적 축소
유 휴공간 매각·임대·민간 개방
- 청사·지사 매각·임대 등 맞춤형 활용도 제고



복리후생

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·정비



외부 지적사항,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
감안하여 **복리후생 항목*** 점검·조정

*사내대출,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,
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, 사택관리비 등



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
'자체점검체크리스트'를 마련

자체 점검

.....>

외부점검단 확인

.....>

점검결과 공시 및
평가반영